

제2절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

1. 서 설

채권의 존재 또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소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 범위, 발생원인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채권의 경우에는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발생원인을 달리하여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⁶⁰⁾

2. 채권존재확인 청구

㉠ 채권존재확인 청구(근저당채권)

피고는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1234호 소외 ○○산업주식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박○○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최고한도액 10,000,000원 중 원고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액 5,000,000원이 원고의 채권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선박우선평권 있는 채권존재확인 청구

1. 피고 주식회사 ○○, 같은 주식회사 ○○은행, 같은 도-속구 ○○ 주식회사는 원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선 제1○○호에 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금 00원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기선 제2○○호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금 00원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기선 제3○○호에 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금 00원의, 피고 주식회사 ○○, 같은 ○○중앙회는 원고가 별지 제4목록 기재 기선 제4○○호에 관하여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은 금 00원의, 각 선박우선평권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금 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360) 채권은 관념적인 권리로서 동일 당사자 사이에도 같은 내용의 수개의 권리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발생일시, 급부의 내용, 채권액, 변제기 등에 의하여 특정된다.(부산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18918 판결)

☐ 보험금청구채권확인 청구

1. 원고 ○○군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고 및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 합자회사 ○○환경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고 및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

1. 사고 내용

원고 합자회사 ○○환경개발의 직원인 소외 김○관이 2014. 0. 0. 11 : 30경 38가1234호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군 ○○면 ○○리 산 3 내리막 커브길을 ○○방면에서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위 도로 오른쪽 갓길로 행군 중이던 제○사단 ○연대 ○대대 소속의 군인인 소외 박○○, 조○○, 장○○, 김○○, 고○○, 김○○, 임○○ 등을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박○○, 조○○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 : 56경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장○○으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김○○에게 요치 2주간의 흉부타박상 등을, 위 고○○에게 요치 2주간의 흉, 요부타박상 등을, 위 김○○에게 요치 2주간의 견비타박상 등을, 위 임○○에게 요치 2주간의 두통 등을 입게 한 사고. 끝.

2. 보험계약의 내용

피보험자 : ○○군수

피보험자동차 : 38가1234호

보험기간 : 2013. 5. 11.부터 2014. 5. 11.까지. 끝.

[참조판례] [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갑 재단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가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사고는 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다.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갑 법인은 보험금 청구 시 주계약인 도급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한 사안에서, 갑 법인이 을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무렵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을 상당한 기간 내의 해제라

고 볼 수 없고, 해제 절차의 지연은 갑 법인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이므로, 갑 법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